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26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문대림・허성무・윤준병

김영호・김한규・김 윤

이병진 · 서삼석 · 송옥주

임오경 · 김재원 · 이원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, 경기권 9개소, 경남권 8개소,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, 충북권, 강원권,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, 의료생활권(진료권)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.

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(진료권)을 고려할 때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및 의료기관의 분포,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①	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①		
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			
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			
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			
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			
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			
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u><단</u>			
<u>서 신설></u>	건복지부장관은 인구 및 의료		
	기관의 분포, 상급종합병원으로		
	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		
	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		
	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달리		
	<u>정할 수 있다.</u>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